# 주식백지 신탁제도 안내

재산공개대상자 등은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거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해야합니다.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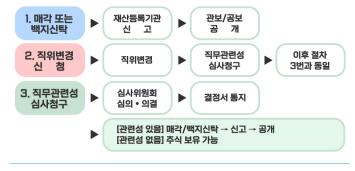
대상자

재산공개대상자(구청장, 구의회 의원)

이해관계자

배우자, 본인의 직계존비속(재산등록 대상 친족)

#### 1. 주식백지신탁제도 흐름도



백지신탁 계약 후

심사청구

처음 신탁 주식 처분 완료시까지

직위변경 신청

변경된 직위에서 직무 관련성 없음 결정시까지

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시까지

의무이행 지연된

의무 발생일 2개월 경과 후부터

# 2. 신고기준일(법 제14조의4제1항 및 제14조의6제2항)

- ▼ 3천만 원을 초과한 날 ※기존 주식이 상승하여 3천만원을 초과한 날 포함
-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
- 변동사항 신고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(법 제6조의3 제1항·제2항)
- ▼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 직무관련성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
- 백지신탁계약 체결 후, 이해관계자가 주식회사의 발기인으로서  $\overline{\mathbf{V}}$ 주식을 인수한 날(법 제14조의6제1항 단서)
- 백지신탁계약 체결 후,  $\overline{\mathbf{V}}$ 상속·증여 등의 사유로 주식을 신규 취득한 날(영 제27조의9)
- ▼ 공개대상자등의 직무(상임위원회, 보직 등)가 변경된 날

#### 3.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의 신고

 $\square$ 

공개대상자 등은 신고기준일부터 2개월 이내에 보유주식을 전부 또는 3천만 원 이하로 매각 및 백지신탁



매각·백지신탁신고서와 매각·백지신탁공개목록 (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 3·4서식) 작성 후 해당 등록기관 제출 ※ 등록기관은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 사실 공개

#### 4.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

☑ 원래 직위에서의 심사 청구

법 제14조의5 제6항

보유 주식이 직무와 관련성 없다고 생각되어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

▼ 직위변경 후 심사 청구

법 제14조의13

보유 주식이 담당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, 직위변경을 신청하여 직위변경 완료 후 심사 청구

[제출서류] 심사청구서, 보유주식 관련자료(잔고증명서 등), 지연사유서(기준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는 경우)

### 5. 심사결정 통지에 따른 이행조치

직무관련성 "없음" 결정 받은 주식 ▶ 보유 및 거래 가능 ※ 직무가 변경될 경우 재심사를 받아야 함

직무관련성 "<mark>있음</mark>" 결정 받은 주식

- 총가액 <mark>3천만 원 초과 ▶</mark> 1개월 이내 매각 또는 백지신탁 후 신고 ※ 전부 매각(백지신탁) 또는 3천만원 이하로 일부 매각(백지신탁) 가능
- 총가액 3천만 원 이하 ▶ 보유 가능

※ 주가상승 등으로 3천만 원 초과 시, 1개월 이내 매각 또는 백지신탁 후 신고

#### 6. 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위반 주요 사례

연도 중 보유주식이 3천만원을 초과하였으나 정기재산 변동신고기간까지만 심사를 청구하면 된다고 판단하여 심사청구 지연

oo시의회 위원회 위원으로 '직무관련성 없음' 결정을 받아 주식을 보유하던 중 △△위원회로 상임위를 변경하였으나 심사청구 지연

재산등록의무자의 배우자, 직계존비속의 등의 주식 내역을 파악하지 못해 심사청구 지연

"주식백지신탁제도 의무 이행일(2개월)은 재산신고기간과 상이합니다."

# 7. 의무위반시 제재

- ▼ 경고 및 시정조치 (법 제14조의5 제11항)
- ▼ 과태료 부과(법 제30조)
- ☑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(법 제22조)
- 주식백지신탁 거부의 죄(법 제24조의2)

"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주식백지신탁 제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, 직무회피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의무위반에 해당하여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제재"